제1장

개인적 법익 침해

사생활 보호
범죄사건 보도
아동학대사건 보도

제1장

개인적 법익 침해

사례 01 사생활 보호 – 발견 후 실종 아동 초상권 침해

의결번호	제2023-2호	매체명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대상보도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2022년 12월 20일 사회면 「폭설 때 사라진 광주 중학생, 실종 나흘 만에 무사히 돌아왔다」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당사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함		

심의 개요

광주광역시에서 실종신고 된 중학생의 무사 귀가 사실을 보도하면서, 해당 아동의 실종 당일 CCTV사진과 근황사진 및 성명을 공개하여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1항 위반으로 상정하였다.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①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내용의 공개에 당사자의 동의가 있었거나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으로서 그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권고 이유

신속한 실종자 발견 등을 위해 실종보도에 통상 공익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견 후 귀가조치 된 아동의 신원을 공표하는 것까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특히 당사자가 미성년자임을 감안할 때 초상 및 성명을 여과 없이 보도한 것은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기사의 초상 및 성명 공표는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시정권고를 결정하였다.

심의 결과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 결정 후 언론사는 실종 당사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근황사진을 삭제하고 성명의 일부를 비공개하는 것으로 수정하였다.

사례 02 사생활 보호 – 일반인 초상권 침해 ①

의결번호	제2023-434호	매체명	뉴스속닥
대상보도	뉴스속닥 2023년 04월 26일 패스트이슈면 「"난 기억없어.. ○○○ 군무원 신상, '학폭' 가해 사실 없다 했지만 거짓말 딱 걸렸다」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사인(私人)의 초상이 공표된 부분을 식별되지 않도록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함		

심의 개요

학교폭력 피해자가 스스로 방송 등을 통해 피해사실과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사건을 다루면서, 가해자이거나 가해자로 오인될 수 있는 인물 등의 고등학교 졸업 사진 및 근황 사진을 공개하며 개인의 초상을 식별 가능하도록 공표하여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1항 위반으로 상정하였다.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①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내용의 공개에 당사자의 동의가 있었거나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으로서 그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권고 이유

당사자를 학교폭력 가해자로 다룬 보도임을 비추어 볼 때 당사자가 초상 공표에 동의를 했다고 볼 수 없으며, 피해자의 유튜브 폭로 영상을 통해 가해 당사자의 초상이 이미 공표되었더라도 당사자를 공적 인물로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또한 이 사건 보도가 학교폭력을 고발하고자 하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점은 있으나, 가해자가 공적 인물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초상이 공중의 정당한 관심 대상이라 볼 수 없다. 비록 초상 일부가 비식별 처리되었으나 그 조치가 미흡하여 당사자를 아는 사람이라면 쉽게 알아차릴 정도에 이른다.

따라서 위 기사의 초상 공표는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시정권고를 결정하였다.

심의 결과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 결정 후 언론사는 해당 기사를 삭제하였다.

사례 03 사생활 보호 – 일반인 초상권 침해 ②

의결번호	제2023-812호	매체명	디스패치뉴스
대상보도	디스패치뉴스 2023년 09월 18일 SNSFeed면 「“의정부 교사 가해 학부모 OOO와 그 아들” 신상 폭로 SNS 등장」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사인(私人)의 성명 등이 공표된 부분을 식별되지 않도록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함		

심의 개요

이른바 학부모 갑질로 인해 사망에 이른 것으로 알려진 초등교사 사건을 보도하면서, 개인의 SNS에 공개된 사건 관련 학부모와 자녀의 성명과 신상을 공표하여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제1항 위반으로 상정하였다.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①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내용의 공개에 당사자의 동의가 있었거나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으로서 그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권고 이유

해당 학부모 측이 사망 사건과의 인과관계를 부인하며 적극 대응의사를 밝힌 점을 비추어 볼 때 당사자가 성명 등의 공표에 동의를 했다고 볼 여지가 없다. 또한 이 사건 보도가 공공의 상당한 관심을 받는 사안에 관한 것이나 당사자가 공적 인물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 사인의 신원을 공중의 정당한 관심 대상이라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위 기사의 성명과 신상 공표는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시정권고를 결정하였다.

심의 결과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 결정 후 언론사는 해당 기사를 삭제하였다.

사례 04 사생활 보호 – 유명인 가족 초상권 침해

의결번호	제2023-868호	매체명	인터넷 스포츠서울
대상보도	인터넷 스포츠서울 2023년 10월 04일 연예면 「'아빠'된 ○○ ○○○, 사기혐의 피소...NFT 사업 홍보에 불똥」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사인(私人)의 초상이 공표된 부분을 식별되지 않도록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함		

심의 개요

유명 프로게이머 겸 방송인이 게임 사업에 연루된 수십억 원대 사기혐의로 피소된 사실을 보도하면서, 당사자와 그 배우자의 결혼사진을 공개하며 사안과 무관한 배우자의 초상을 공표하여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1항 위반으로 상정하였다.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①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내용의 공개에 당사자의 동의가 있었거나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으로서 그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권고 이유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해당 방송인과 달리 배우자의 경우 일반 사인에 불과하며, 유명인의 배우자로서 과거 방송에 동반 출연한 사실이 있다 하여 이를 달리 볼 수 없다. 과거 방송을 통해 공표된 초상을 재공표한 것이라 하더라도 남편의 사기 혐의를 다룬 보도에 대해서까지 당사자의 초상에 대한 동의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초상 당사자인 배우자는 보도논점과도 무관하므로 배우자의 초상을 공중의 정당한 관심 대상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기사의 초상 공표는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시정권고를 결정하였다.

심의 결과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 결정 후 언론사는 배우자의 초상이 함께 공개된 결혼사진을 삭제하고 유명 프로게이머 겸 방송인의 단독 사진으로 수정하였다.

사례 05 사생활 보호 – 미성년 자녀의 초상 공개 ①

의결번호	제2023-716호	매체명	원투뉴스
대상보도	원투뉴스 2023년 07월 27일 이슈면 「특수 교사 고발한 유명 웹툰 작가가 ○○○이었어?...무슨일이길래」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사인(私人)인 미성년자의 초상이 공표된 부분을 식별되지 않도록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함		

심의 개요

발달장애 자녀의 담당교사에 대한 과도한 법적 대응 의혹으로 논란이 된 유명 웹툰작가에 관하여 보도하면서, 과거 작가의 개인 SNS에 게시된 가족사진을 사용하며 해당 작가의 미성년 자녀들 초상을 공표하여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제1항 위반으로 상정하였다.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①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내용의 공개에 당사자의 동의가 있었거나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으로서 그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권고 이유

장애로 인한 돌발행동에서 비롯된 부정적 사안을 다룬 보도에서 문제행동의 당사자인 장애아동 및 그 형제의 초상을 공표하는 데 당사자 측의 동의의사를 추정할 여지는 없을 것이다. 설령 해당 작가가 널리 알려진 인물이고 그를 둘러싼 논란이 사회적으로 상당한 관심을 받는 사안이라 하더라도, 자녀들의 경우 일반 사인에 불과하고 공적 인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건 자체가 아닌 자녀들의 초상이 공중의 정당한 관심 대상이라 할 수 없다. 특히 당사자들이 미성년자임을 감안하면 더욱 두터운 인격권 보호가 요구된다.

따라서 위 기사의 초상 공표는 당사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시정권고를 결정하였다.

심의 결과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 결정 후 언론사는 해당 기사를 삭제하였다.

사례 06 사생활 보호 – 미성년 자녀의 초상 공개 ②

의결번호	제2023-1030호	매체명	오에스이엔(OSEN)
대상보도	오에스이엔(OSEN) 2023년 10월 31일 연예면 「○○○•○○○, 잉꼬부부→이혼, 14년 결혼생활 화제 모먼트 [Oh!쎈 초점]」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사인(私人)의 초상과 이름이 공표된 부분을 식별되지 않도록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함		

심의 개요

유명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의 이혼경위 및 각종 논란을 보도하면서, 유명 아나운서의 개인 채널에 출연한 미성년 자녀의 영상을 바탕으로 자녀의 초상과 이름을 함께 공표하여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조 제1항 위반으로 상정하였다.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①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내용의 공개에 당사자의 동의가 있었거나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으로서 그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권고 이유

이미 공표된 자녀 초상 등을 재공표한 것이라 하더라도 부모에 관한 부정적 사안을 다룬 보도에서까지 당사자로서 자녀 본인의 동의의사를 추정하기는 어려우며 보도논점도 자녀와 무관하므로 이를 공중의 정당한 관심 대상이라 할 수 없다. 특히, 해당 방송인과 달리 자녀는 일반 사인에 불과하여 공적 인물로 볼 수 없으며, 미성년자임을 감안하면 더욱 두터운 인격권 보호가 요구된다.

따라서 위 기사의 초상과 이름의 공표는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커 시정권고를 결정하였다.

심의 결과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 결정 후 언론사는 미성년 자녀의 초상과 성명이 함께 공개된 사진을 삭제하였다.

사례 07 사생활 보호 – 내밀영역 공개

의결번호	제2023-177호	매체명	경기연합신문
대상보도	경기연합신문 2023년 02월 17일 연예면 「"헤르페스 성병 옮았다" 폭로한 누리꾼에 '나는 솔로' 13기 남성 출연자 2명 지목됐다」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당사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함		

심의 개요

연애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한 일반 사인(私人)에 관하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성병 의혹이 폭로된 상황을 보도하면서, 방송출연 사진과 방송에서 사용한 가명을 공개하여 해당 인물을 특정하고 해당 인물의 내밀한 개인병력을 단정해 공표하여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제1항 위반으로 상정하였다.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①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내용의 공개에 당사자의 동의가 있었거나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으로서 그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권고 이유

당사자 초상 중 얼굴 부분을 비식별처리하였으나, 출연자별로 부여된 가명을 언급하고 폭로 글에서 당사자를 추정할 수 있는 단서로 제시한 옷 사진을 특정 출연자의 방송의상과 대응시켜 보도함으로써 특정 출연자가 성병 폭로의 대상자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게 하였다. 일반 사인(私人)에 불과한 개인의 병력 등이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나 공익 목적을 위한 것이라 보기 어려움에도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와 함께 병력 등을 여과 없이 공표한 것은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기사의 내밀영역 공표는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시정권고를 결정하였다.

심의 결과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 결정 후 언론사는 해당 기사를 삭제하였다.

사례 08 사생활 보호 – 일반인 신상 공개

의결번호	제2023-1075호	매체명	프리덤 조선(Freedom ChoSun)
대상보도	프리덤 조선(Freedom ChoSun) 2023년 11월 17일 정치·사회면 「대한민국 국적 취득한 탈북민 74명, 중국공안이 체포해 강제북송?」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제9조(기타 개인적 법익 침해)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당사자인 북한이탈주민의 신분증이 전부 공표된 부분을 식별되지 않도록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함		

심의 개요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사건에 관하여 보도하면서, 관련 인권단체가 추적중인 북한이탈주민의 초상,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이 노출된 주민등록증을 공표하여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1항 및 제9조 제1항 제2호 위반으로 상정하였다.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①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내용의 공개에 당사자의 동의가 있었거나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으로서 그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기타 개인적 법익 침해) ① 언론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도에서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

권고 이유

공표된 신분증의 당사자는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도 존재하는 등 2006년 이후로 현재까지 생사불명인 상태이고 주변 가족의 소재나 의사확인도 곤란할 것으로 보여 현 시점에서 신분증 공표에 관한 당사자 측의 동의 의사는 단정할 수 없다. 한편,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사건의 경우 국제사회에서도 논란의 대상인 만큼 공적 관심사항이라 할 수 있으며 당사자를 추적 중인 인권단체의 노력을 감안할 때 당사자 식별을 위한 일정 수준의 개인정보 공표는 공공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실종자 수색이나 제보 수집 등을 위한 수준을 넘어 개인정보의 핵심을 이루는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신분증의 내용 전부를 공개하는 것은 불온한 목적의 도용 등 추가적인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당사자 측의 의사에 부합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기사의 신분증 전부 공표는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시정권고를 결정하였다.

심의 결과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 결정 후 언론사에서 주민등록증 사진에 공개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비식별 처리 하였다.

사례 09 사생활 보호 – 통신비밀 침해 ①

의결번호	제2023-607호	매체명	예스미디어
대상보도	예스미디어 2023년 06월 25일 연예면 「축구 선수 ○○○ 여자친구의 사생활 폭로, ○○○ 공식입장 발표」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당사자의 내밀영역에 속하는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부분 및 사적인 통신내용이 공표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함		

심의 개요

유명 축구선수에 관한 사생활 폭로 사건을 보도하면서, 축구선수와 연인사이였던 관계를 주장하는 여성과의 통신내용 및 성관계 장면을 충분히 식별가능하도록 공표하여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제1항 및 제1조 제2항 위반으로 상정하였다.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①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내용의 공개에 당사자의 동의가 있었거나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으로서 그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언론은 사적인 전화나 통신내용 등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권고 이유

해당 폭로 이후 당사자가 폭로내용을 부인하며 유포자를 고소한 사실로 볼 때 문제된 공표행위는 명백히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며, 당사자가 널리 알려진 유명인으로서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성관계나 이성교제와 같은 사생활의 내밀영역에 속하는 사항의 공표까지 수인해야 할 의무는 없다. 실제 성관계 장면이나 잦은 이성교제에 관한 구체적인 통신내용을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공표된 내용 중 일부가 당사자 스스로 촬영한 영상이라고 하여도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기사의 사생활 폭로내용 공표는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시정권고를 결정하였다.

심의 결과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 결정 후 언론사는 해당 기사를 삭제하였다.

사례 10 사생활 보호 – 통신비밀 침해 ②

의결번호	제2023-612호	매체명	인터넷 중앙일보
대상보도	인터넷 중앙일보 2023년 07월 04일 사회면 「"○○ ○○○, 내 아내와 불륜"...녹취록 폭로한 40대 남편 송치」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당사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부분 및 사적인 통신내용이 공표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함		

심의 개요

유명 연예인의 불륜 의혹을 둘러싼 법적 공방에 관하여 보도하면서, 해당 연예인과 불륜 의혹 상대방 간의 관계를 유추할 수 있는 사적 통신내용을 공표하여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제1항 및 제1조 제2항 위반으로 상정하였다.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①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내용의 공개에 당사자의 동의가 있었거나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으로서 그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언론은 사적인 전화나 통신내용 등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권고 이유

자신의 아내와 모 연예인 간 불륜의혹을 제기한 남성이 당사자인 해당 연예인을 고소하여 형사입건에 이르렀고 검찰 송치된 혐의의 범죄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문제된 통신내용 공표 또한 범행의 주요 수단 중 하나를 구성하는 바, 이를 다투는 법적공방에 관한 보도에서 그 통신내용을 공표하는 것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할 뿐만 아니라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통신비밀의 자유를 훼손하여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당사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부분 및 사적인 통신내용의 공표는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시정권고를 결정하였다.

심의 결과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 결정 후 언론사는 당사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통신내용을 삭제하였다.

사례 11 범죄사건 보도 등 – 피의자 신원공개 ①

의결번호	제2023-270호	매체명	인터넷 부산파이낸셜뉴스
대상보도	인터넷 부산파이낸셜뉴스 2023년 03월 20일 사회면 「"사과 박스 같다" 미술 동호회 단톡방에 환자 내시경 사진 뿌린 의사」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범죄사건 보도 등)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형사사건 피고인의 신원을 알 수 있도록 언급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함		

심의 개요

자신이 검진한 환자들의 개인정보와 내시경 사진 등을 SNS 메신저에 유포하여 기소된 의사에 관해 보도하면서,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소개 문구 및 특징적인 이력을 구체적으로 공표하여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 제1항 위반으로 상정하였다.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범죄사건 보도 등) ① 언론은 형사사건의 피의자(혐의자, 용의자 포함. 이하 같다) 또는 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위배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중대하거나 흉악한 범죄, 공적 인물의 사회적으로 주목을 끄는 범죄에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또는 형사사법의 집행을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권고 이유

해당 보도가 사건·사고를 다루는 공익 목적의 기사라는 점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본 사건이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거나 해당 피고인이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그가 누구인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소개 문구를 구체적으로 언급, 공표한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배하여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형사사건 피고인의 신원을 알 수 있도록 언급한 부분은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시정권고를 결정하였다.

심의 결과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 결정 후 언론사는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소개 문구 및 특징적인 이력을 구체적으로 공표한 부분을 삭제하였다.

사례 12 범죄사건 보도 등 – 피의자 신원공개 ②

의결번호	제2023-523호	매체명	나남뉴스
대상보도	나남뉴스 2023년 06월 13일 뉴스면 「"이해가 안되네" 부산 돌려차기男의 반성문 공개에 모두 분노했다」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범죄사건 보도 등)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형사사건 피고인의 신원을 알 수 있도록 언급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함		

심의 개요

부산에서 발생한 강간살인미수 사건의 피고인에 대해 유튜버가 공개한 피고인의 신원정보를 보도하면서 해당 피고인의 초상, 성명, 나이, 출생지, 직업, 키, SNS계정 등 개인 정보를 상세히 공표하여「시정권고 심의기준」제3조 제1항 위반으로 상정하였다.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범죄사건 보도 등) ① 언론은 형사사건의 피의자(혐의자, 용의자 포함. 이하 같다) 또는 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위배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중대하거나 흉악한 범죄, 공적 인물의 사회적으로 주목을 끄는 범죄에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또는 형사사법의 집행을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권고 이유

당사자는 형사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재판 진행 중 유명 유튜버의 폭로로 당사자의 신상이 이미 공개되었더라도 당사자를 공적 인물로 볼 수 없다. 비록 '피고인 신상공개'라는

사회적 논의를 불러일으켜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바가 있더라도, 법률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자의적인 신상 공표는 사적 제재수단에 불과하여 반드시 공공성을 가진 것이라 볼 수 없다.

나아가 통상적으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8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5조)에서 정한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피의자의 신상정보의 범위를 넘어서 직업, SNS계정 등의 정보까지 공표한 것은 공공의 이익에 필요한 내용이라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기사의 신상정보 공표는 무죄추정의 원칙 및 익명보도의 원칙 등에 반하여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시정권고를 결정하였다.

관련 조문*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4.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5조(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위 조항은 2023.10.24. 법률 개정을 통해 폐지됨

심의 결과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 결정 후 언론사는 피고인의 초상 및 근무지 등 신원을 알 수 있도록 공표한 부분을 삭제하였다.

사례 13 아동학대사건 보도 – 아동학대 행위자 신원 공개

의결번호	제2023-118호	매체명	더데이즈
대상보도	더데이즈 2023년 01월 01일 화제의PICK면 「창녕 아동학대 엄마 신상 목숨 걸고 탈출한 아이의 근황까지 사건 내용 총정리」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심의기준 제6조의2 (아동학대사건 보도)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아동학대사건 가해자(학대행위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함		

심의 개요

지난 2020년 경남 창녕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에 관해 보도하면서, 학대행위자인 계부와 친모의 초상, 성명 등 신상정보를 공표하여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6조의2 제1항 위반으로 상정하였다.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6조의2(아동학대사건 보도) ① 언론은 아동학대사건의 피해자, 학대행위자, 고소인, 고발인 또는 신고인의 초상, 성명, 주소, 나이, 직업, 그밖에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권고 이유

해당 사건 이후 피해아동이 위탁가정 보호 하에 학대행위자들로부터 분리된 지 수년이 경과한 점, 학대행위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신상정보를 그대로 공표할 경우 피해아동에게 2차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위 기사는 피해아동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기사의 아동학대 사건 가해자(학대행위자)의 신상정보를 공표한 것은 피해아동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시정권고를 결정하였다.

사례 14 아동학대사건 보도 – 아동학대 행위 상세 묘사

의결번호	제2023-50호	매체명	조선비즈
대상보도	조선비즈 2022년 12월 21일 연예면 「'결혼지옥' 측, "의붓딸 '신체접촉' 장면, 많은 분께 심려 끼쳐...변명의 여지 없다" (전문)」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심의기준 제6조의2 (아동학대사건 보도)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아동 학대행위가 지나치게 상세히 묘사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함		

심의 개요

재혼가정에서 의붓딸과 의부의 놀이 장면에서 의부의 과도한 신체 접촉 장면 노출로 논란이 된 방송프로그램에 관해 보도하면서, 다수 시청자로부터 성추행 등 아동학대 의혹이 제기된 문제의 방송영상을 공개하며 아동의 피해상황을 그대로 공표하여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6조의2 제2항 위반으로 상정하였다.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6조의2(아동학대사건 보도) ① 언론은 아동학대사건의 피해자, 학대행위자, 고소인, 고발인 또는 신고인의 초상, 성명, 주소, 나이, 직업, 그밖에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